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17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별표 1]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3		양파 · 샬롯(shallot) · 마늘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10	양파와 샬롯(shallot) 1. 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10	20,000톤

[별표 2]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0톤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0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p>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콰머 스콰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콰머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콰머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Indian mackerels</i>)[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콰머 모로루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루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병어 [팜푸스(<i>Pampus</i>)속], 꿩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카테루스(<i>Decapterus</i>)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수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데(<i>Istiophoridae</i>)].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脞肉)은 제외한다.</p>			
0303	54	<p>고등어[스콰머 스콰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콰머 오스트랄라시쿠스</p>	<p>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p>	0	10,000톤

		<p>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콰머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p> <p>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p> <p>1. 석유</p> <p>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p> <p>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p> <p>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p> <p>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p> <p>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p> <p>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p> <p>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p> <p>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p> <p>자. 기타</p> <p>2. 역청유(瀝靑油)</p>	<p>것</p> <p>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p>	<p>0</p>	<p>13,600,000 배럴</p>
2711		<p>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p>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별표 3]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5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	11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			
		2. 기타		0	16,794톤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1	부화용 수정란			
0407	11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0	
0203	2	냉동한 것			10,000톤
0203	29	기타		0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86,000 킬로리터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00,000,000 배럴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
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
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
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별표 4]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양귀라(<i>Anguilla</i>)속]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 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 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 · 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 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	사료용 사료용	0 0	23,000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0	184,000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수입 전량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수입 전량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100,000톤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수입 전량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3. 기타	가공용	0		2,150,000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0		
3505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디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텍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223,686톤
3505	10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0		
3505	20	글루(glue)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 粕)용		0		1,200,000톤

1207	2	목화씨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수입 전량
1214		스워드(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샐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티(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 사료용		0	
1214	90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 사료용		0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900,000톤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용	0	수입 전량
1507	90	기타			
		1. 정제유	식품용	0	수입 전량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粗油)			
		1. 해바라기씨유		0	수입 전량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수입 전량
1518	00	동물성 ·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			

		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3. 기타		
		가. 사료용	0	20,000톤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05,000톤
1701	99	기타	5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0	70,000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비트펄프 (beet-pulp) 2. 버섯 재배용 비트펄프 (beet-pulp)	0	수입 전량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450,000톤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목화씨 껍질	사료용	0	수입 전량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12,000톤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0	수입 전량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 아세틸렌 블랙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2	희가스(rare gas)			
2804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네온 2. 크립톤 3. 크세논(제논)	0	수입 전량
2804	69	기타	실리콘메탈(실리콘제조 및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			

		(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젠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젠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클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	0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0	30	티우람모노술폰파이드·티우람디술폰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폰파이드	티우람디술폰파이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4	비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	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	0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	0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0		

		한다)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			

		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한정한다)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	1	그 밖의 무기산			
2811	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무수불산	0	수입 전량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6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망간산염			
2841	69	기타	이차전지 제조용 양극 활물질	0	수입 전량
2841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리튬코발트산화물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제	0	수입 전량

			조용으로 한정한다)		
2921	59	기타	자 일 릴 렌 다 이 아 민 (XDA)[자일릴렌다이소 시아네이트(XDI) 제조 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 르, 이들의 염			
2922	49	기타	5-아미노-2,4,6-트리요 오드 이소프탈산 클로 라 이 드 (5-amino-2,4,6-triiodo i s o p h t h a l o y l d i c h l o r i d e)(조영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 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2923	90	기타	테트라에틸암모늄 테 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Tetraethylammonium tetrafluoroborate)(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한다)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p>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p> <p>1. 비료나 비료제조용</p> <p>2. 기타</p>		0	수입 전량
3105		<p>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p>			
3105	10	<p>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p>	요소수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105	30	<p>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p>		0	수입 전량
3204		<p>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3204	1	<p>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p>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수입 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1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2,000톤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0	수입 전량
			1.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91,800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36,000톤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8,000톤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휴대폰용 플라스틱 렌즈제조용	0	수입 전량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			

		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6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9	기타	폴리불화비닐리텐 (PVDF) 바인더(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용 플라스틱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90	기타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파우치(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수입 전량
4104	19	기타	1		
4104	4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4104	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4104	49	기타	1		
5002	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다.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라.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0		200톤
			0		

		<p>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p> <p>2. 옥사(doupion silk)</p> <p>3. 기타</p>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12	<p>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p> <p>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p> <p>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p>	0		수입 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32	<p>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p> <p>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p>			

		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테시텍스 이하 232.56테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3. 기타		0 0 0	수입 전량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전극기재 제조용 탄소섬유 제품(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006	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			

		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2.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0	2	팔라듐(palladium)			
7110	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0	3	로듐(rhodium)			
7110	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수입 전량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 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1	수입 전량
7202	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페로티타늄(ferrotitanium)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			

		계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이차전지 제조용	0	5,500톤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0	수입 전량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	20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열로이(casting alloy)	0	수입 전량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	1	괴(塊)			
8104	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0	수입 전량
8104	19	기타		0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 전량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철강제조용	0	수입 전량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나.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초순수 공급장치	0	수입 전량
8421	9	부분품			
8421	99	기타	흡착제(이차전지 격리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	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8	그 밖의 기기			
8479	89	기타	와인더(탄소섬유 권취용으로 한정한다)	0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	80	그 밖의 기계	연신기(전해질막 제조 시 사용되는 다공성 지지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8	그 밖의 기기			
8479	89	기타	코팅기(전해질막 제조 시 사용되는 다공성 지지체 코팅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	40	<p>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킷(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p> <p>2. 기타</p>	<p>감속기(디스플레이 자동화 로봇 부품용으로 한정한다)</p>	0	수입 전량
8503	00	<p>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p> <p>나. 기타</p>	<p>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p>	0	수입 전량
8505		<p>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p>			
8505	1	<p>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p>			
8505	11	<p>금속으로 만든 것</p>	<p>영구자석(친환경 자동차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p>	0	4,848톤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	19	기타	소성로 또는 탄화로(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탄소섬유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1	전극			
8545	11	노(爐)용		0	수입 전량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9018	3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 놀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	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 없다)	카트리지형 주사기(성 장호르몬 치료제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별표 5]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28,875,000 배럴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2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2	

[별표 6]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5	100,000,000 배럴

[별표 7]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 화수소			수입 전량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2년 12월 31일에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는 111개 물품 중 옥수수, 대두 등 9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9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총 101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양과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닭고기와 냉동고등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계란가공품, 돼지고기 및 조주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료용 옥수수 등 91개 물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 석유가스 등은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